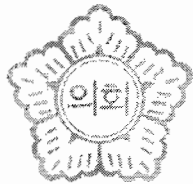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2019. 6.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희옥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경위

- 가. 의안번호: 19-69
- 나. 제 출 자: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19년 5월 27일(월)
- 라. 회부일자: 2019년 5월 29일(수)

2.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 반영

- 법 제4조제3항 → 법 제4조제4항(안 제5조제2항)
- 법 제15조제6항 → 법 제15조제7항(안 제9조제2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 위원회의 위원은 → 위원회는(안 제5조제2항)
- 위원으로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안 제5조제2항)
-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 공수의(公獸醫)에게(안 제12조제2항)
- 한다 → 하며,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안 제16조제1항)
-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 예산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분양자에게(안 제19조제1항)
- 활동에 대하여 → 활동을 활성화하고(안 제19조제2항)
-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 삭제(안 제5조제2항)

다. 동물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 반려동물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 구청장의 의무 신설(안 제3조제3항)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5조제8항~제11항)
- 길고양이의 관리 등 신설(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신설(안 제20조)
- 반려동물의 지원 등 신설(안 제21조)
-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규제여부: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19. 3. 7. ~ 3. 27.(제출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4.16.)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검토의견으로는

- 국민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었으나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이나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 행위가 때때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성숙한 동물 보호·관리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짐.
- 따라서, 생명존중 및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최근 3년 간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보면 점차 증가추세이고 최근에도 경기 불황 등으로 사육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동물 처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1〉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처리현황

(단위: 두)

구분	처 리 내 역							축종별 처리실적			
	계	반환	분양	자연사	안락사	중성화 (TNR)	보호 (방사)	계	개	고양이	기타
2016년	976	128	230	160	30	376	52	976	240	714	22
2017년	1,088	121	239	129	12	476	111	1,088	242	837	9
2018년	1,193	105	187	103	5	665	128	1,193	222	962	9
계	3,257	354	656	392	47	1,517	291	3,257	704	2,513	40

- 〈표1〉 에서와 같이 유기동물 처리현황 중 다른 동물에 비하여 고양이 처리건수가 월등히 높아 고양이 개체 수 관리에 실질적인 정책이 실행되고 동시에 구민 민원 등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길고양이에게 자발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자칭 ‘캣맘’이 늘어남에 따라 개체 수 증가와 주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안 제16조제1항에 명시한 양성화한 급식소 설치는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급식소를 이용하는 길고양이 중 중성화되지 않은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을 받게 해 개체 수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급식소 청결상태, 훼손여부 등을 상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우리구 유기동물보호 관리 체계를 보면 구역별로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총 6개소에서 유기견 보호 및 분양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표2〉 동물병원별 유기동물 처리 현황

(단위: 두)

연도 \ 병원명	홍익	웰케어	망원	용강	박창석	동물사랑
2018년	403	48	19	18	18	1
2017년	353	72	2	33	40	38
2016년	104	16	47	35	29	23
계	860	136	68	86	87	62

- 따라서 안 제22조에 명시한 동물분양센터를 향후 추가로 설치하여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신속하고 안전한 동물보호 체계 유지와 유기동물 분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생명존중 위한 교육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조례개정도 필요하나,
- 최근 맹견 및 반려견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상해, 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동물보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또한 절실하므로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 유기견 처리비용(1두당) : 180,000원 (서울시 유기동물 사업 원가분석 용역 적용)

항목	계	구 조 비	의 료 비	보관비 (20일 계류)	사체처리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기타잡비)
금액	180,000원	40,000원	30,000원	40,000원	10,000원	60,000원

□ 길고양이 TNR 처리비용(1두당) : 150,000원 (서울시 유기동물 사업 원가분석 용역 적용)

항목	계	구 조 비 (포획·재료비)	의 료 비 (수술비 포함)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 기타잡비)
금액	150,000원	30,000원	90,000원	30,000원

□ 동물병원별 유기동물 처리 현황

(단위: 두)

병원명	구분	처리내역								축종별 처리실적			
		계	반환	분양	자연사	안락사	방사	보호중	중성화 (TNR)	계	개	고양이	기타
홍익	2016	104	24	54	19	7	0	0	18	104	47	51	6
	2017	353	52	133	135	9	21	3	220	353	117	231	5
	2018	403	72	178	111	8	25	9	294	403	150	246	7
	계	860	148	365	265	24	46	12	532	860	314	528	18
웰케어	2016	16	9	5	2	0	0	0	64	16	13	3	0
	2017	72	24	38	10	0	0	0	74	72	41	30	1
	2018	48	9	24	14	0	0	1	145	48	15	33	0
	계	136	42	67	26	0	0	1	283	136	69	66	1
망원	2016	47	21	18	5	0	3	0	62	47	36	11	0
	2017	2	0	1	1	0	0	0	73	2	0	2	0
	2018	19	12	6	1	0	0	0	71	19	19	0	0
	계	68	33	25	7	0	3	0	206	68	55	13	0
용강	2016	35	11	4	15	5	0	0	13	35	13	22	0
	2017	33	4	16	11	1	1	0	12	33	7	26	0
	2018	18	9	5	2	2	0	0	23	18	12	6	0
	계	86	24	25	28	8	1	0	48	86	32	54	0
박창석	2016	29	2	3	16	5	3	0	51	29	3	22	4
	2017	40	3	18	17	2	0	0	88	40	12	26	2
	2018	18	3	7	7	1	0	0	70	18	6	12	0
	계	87	8	28	40	8	3	0	209	87	21	60	6
동물사랑	2016	23	0	13	10	0	0	0	7	23	1	22	0
	2017	38	2	19	17	0	0	0	0	38	3	35	0
	2018	1	1	0	0	0	0	0	0	1	1	0	0
	계	62	3	32	27	0	0	0	7	62	5	57	0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8. 보호 중인 동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경우